대학원학칙시행세칙

- 제정 2007. 3. 1.
- 개정 2010. 9. 6.
- 개정 2011. 3.21.
- 개정 2014. 3. 1.
- 개정 2014. 9. 1.
- 개정 2014.10. 1.
- 개정 2015.12. 1.
- 개정 2017. 9. 1.
- 개정 2019. 9. 1.
- 개정 2021. 4. 1.
- 개정 2021. 9. 1.
- 개정 2023. 2. 1. 개정 2023. 2. 1.
- 개정 2023.11. 1.
- 개정 2024. 2.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대학원 학칙(이하 "학 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학

- 제2조(입학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내규 에 따로 정한다.
 - 1.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3조(제출서류)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내규에 따로 정한다.
 - 1.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가. 입학원서 (정해진 양식)

1부

나.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현역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진학허가서 1부

마. 학업계획서 1부 (개정 2011.3.21.)

바. 그 밖에 입학전형에 필요하여 입학요강에 명시한 서류 1부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 (정해진 양식) 1부

나.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현역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진학허가서 1부

마. 학업계획서 1부 (개정 2011.3.21.)

바. 그 밖에 입학전형에 필요하여 입학요강에 명시한 서류 1부

제4조(시험)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시험하며 전공에 관한 지식과 그 능력, 인격 등을 심사한다.

제5조(사정) ① 각 대학원 입학시험의 사정은 응시자의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시험을 평가하여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합격예정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9.1.)

②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합격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입학) 대학원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함으로 써 입학이 허가된다.

제3장 타 대학원 학점인정 및 협정대학원 수강

- 제7조(타대학원 학점인정 및 협정대학원 수강) ①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하기 전 또는 재학 중에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정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 중 본 대학원과 학점교환협정이 이루어진 협정대학원에서 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을 일정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점인정 범위와 그 구체적 시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8조(외국어시험) ① 석사학위과정은 재학연한 8학기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12학기 이내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6학기 이내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영구

수료생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학기에 외국어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 ② 외국인은 한국어시험 또는 영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1., 2021.9.1.)
- ③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TOEFL IBT 85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G-TELP Level-2 70점 이상 또는 NEW TEPS 32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는 근 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타 외국어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0.9.6., 2019.9.1., 2021.9.1., 2023.11.1.)
- 제9조(응시자격) 석 · 박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은 제1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 **제10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대학원에 내야 한다.
- 제11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 제12조(출제위원) 각 대학원장은 각 과목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교내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 제13조(배점 및 합격기준) 외국어시험 각 과목은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사정에 따라 합격선을 조정하여 사정할 수 있다.

제2절 종합시험

- 제14조(종합시험) 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8학기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12학기 이내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6학기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영구수료생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학기에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제15조(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석사학위 종합시험
 - 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전 과정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24.2.1.)
 - 2. 박사학위 종합시험
 - 가. 박사학위과정에서 이수과목을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 이수과목을 42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0.9.6.)
 - 나. 전 과정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24.2.1.)
- **제16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대학원에서 공고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내야 한다.
- 제17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 제18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석박 사학위통합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9.6.)
 - ② 시험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0.9.6.)
- 제19조(출제위원)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 학과 대학원 강의 담당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제20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21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 ②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시험과목 중 1과목이 낙제인 경우에는 낙제된 과목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낙제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전 과목을 재응시하여 야 한다.

제5장 학위논문

- 제22조(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의 제목선정 및 작성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1명의 교수가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6명 이내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과의 학생이 논문지도가 가능한 교수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해당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초과지도를 허락할 수 있다.
 - ② 논문지도위원회는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과 정은 2명에서 3명,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3명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지도교수에게는 논문지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1.)
- 제23조(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연구계획서 제출)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해당 학과장 (주임교수)과 협의하여 1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부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학기부터 연구계획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6.)
- 제2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본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개정 2015.12.1.)
 - 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 학생을 1년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학위과정 학생을 2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전임교원 외에도 사계의 권위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의 논문지도 자격이 있는 전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 제2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이 동일한 교수가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의 요청으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임 논문지도교수의 지도기간을 승계할 수있다.

- 제26조(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 승인을 득한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
 - ②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
 - 1. 석사학위과정
 - 가. 재학연한 내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나.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다.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해당 학기 취득가능한 자 (개정 2010.9.6.)
 - 라. 전 과정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24.2.1.)
 - 마. 입학일로부터 14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9.9.1.)
 - 2. 박사학위과정
 - 가. 재학연한 내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나.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다.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해당 학기 취득가능한 자 (개정 2010.9.6.)
 - 라. 전 과정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24.2.1.)
 - 마. 입학일로부터 18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9.9.1.)
 -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가. 재학연한 내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나.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다.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해당 학기 취득가능한 자 (개정 2010.9.6.)
 - 라. 전 과정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24.2.1.)
 - 마. 입학일로부터 22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1.)
 - 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9.9.1.)
- 제2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 제28조(논문작성)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제29조(논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1.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과 주제의 학술적 타당성의 조직적 인 서술
 - 2. 박사학위논문: 전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기본지식 또는 기술을 상 당한 정도 수정, 발전시켜야 하며 연구목적과 결과에 대한 분명한 논지

- 제30조(학위청구논문제출 기한)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학위청구논문의 공개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은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는 대학원장의 위임 하에 각 학과장(주임교수)이 실시한다.
 -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발표자는 공개발표 2주 전까지 학위청구논문의 개요를 각 학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학원장은 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 발표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여 발표자에게 알리고 교내 4개 장소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에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⑥ 논문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보고서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재학기간 내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회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제32조(심사위원 선정) ① 각 학과장(주임교수)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후 보를 각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② 각 대학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을 심사·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을 위촉한다.
 - ③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명,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명으로 하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5명 중 1명에서 2명을 외부교수 또는 전문인사로 한다.
 -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4조에서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 제33조(심사위원장) ①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심사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 1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주재하게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각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의결에 있어서는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제34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은 다음의 체제를 따라야 한다.
 - 1. 학위논문작성

가. 규격 : 4·6배판 (18.5cm × 25.5cm)

나. 지질: 80파운드 모조지

다. 전산인쇄로 하되, 양면인쇄도 무방함

라. 표지색깔: 흑색(하드), 회색(소프트)

마. 제본식 : 클로스 양장

2. 학위논문 제본순서와 형식

가. 표지 : 별지 도해 1에 따르되 황금색 명조 2호 활자로 함

나. 내지: 백색내지

- 다. 제출서 : 별지 도해 2에 따름
- 라. 인준서 : 별지 도해 3에 따름
- 마. 국문요지(2page 이내)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외국어로 작성 (개정 2010.9.6.)
- 바. 차례
- 사. 본문
- 아. 참고문헌(자료)
- 자. 부록, 색인, 기타 있을 때
- * 그림 또는 사진의 경우 사진설명→사진의 순서로 배열
- 차. 영문요지(2page 이내)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요지 (개정 2010.9.6.)
- 카. 감사의 글
- 제35조(심사청구) 논문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제출승인을 받아 청구하고 심사용 논문과 심사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3.21.)
- **제36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각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장소에서 심사를 행할 수 있다.
 -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초심 및 종심을 포함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총 3회 이상을,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총 5회 이상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의 내용 및 편제와 서술방법이 제28조와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한 후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심사상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부본, 역본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종심은 논문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의 유무를 판정한다.
- **제37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38조(구술시험)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제 및 내용심사가 완료된 다음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 ②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합격으로 한다.
- 제39조(논문의 평가) ①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논문평가와 구술시험을 종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합격으로 한다.
 - ②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합격을 판정한 경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 제40조(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1조(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심사종료 후 2주일 이 내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 제42조(학위논문 제출) 최종 수정 후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

로 논문전문이 수록된 컴퓨터파일을 제출한 후 제본된 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10.9.6.)

- 1. 학술정보원 제출 (개정 2014.9.1.)
 - 가. 제본된 논문 하드본 4부(심사위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개정 2014.9.1., 2021.4.1.)
 - 나. 학위논문이용동의서
 - 다. 학위논문제출확인서
- 2. 대학원 제출
 - 가. 제본된 논문 하드본 1부
 - 나. 학위논문제출확인서
 - 다.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라. 인준서 사본 1부
- **제43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소속변경

(신설 2010.9.6.)

- 제44조(전과, 전공변경) ① 전과(전공변경)는 1학기 또는 2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전출 및 전입 학과(전공)의 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전과(전공변경)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9.6.)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3.1.)
 - 1. 소속 학과가 폐지된 경우
 - 2. 정부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소속 학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③ 학과(전공)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 1. 학과(전공)변경 신청서
 - 2. 신·구 학과 주임교수(학과장) 및 지도교수 승인서
 - 3. 정부지원 재정지원사업 참여 확인서(해당자)
 - ④ 전과(전공변경)한 경우 전입학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과(전공변경)하기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 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개정 2014.3.1.)
- 제45조(석박사학위통합과정 전환)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석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전환 신청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9.6.)
 - ②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전환허용인원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

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0.9.6.)

- ③ 석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전환된 경우 이수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9.6.)
- ④ 석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전환된 경우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과 이수학기는 기이수 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과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신설 2010.9.6.)
- 제46조(석박사학위통합과정 중도포기) ①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1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9.6.)(개정 2023.2.1.)
 - ②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중도포기자는 학칙에서 정한 석사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0.9.6.)
 - ③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중도포기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학위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0.9.6.)
- 제47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박사인정) ① 석박사학위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학위과 정 포함)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인정하여 학생의 요청으로 박사학위과정 재학 중으로 제 증명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9.6.)
 - ② 전항에 의하여 박사학위과정으로 인정된 자는 장학금 지급 등에 있어 본교 석사학 위 취득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0.9.6.)

부 칙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3조, 제26조의 개정학칙 2011학년도 입학자(편입자 포함)부터 시행한다.

부 최

이 학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학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지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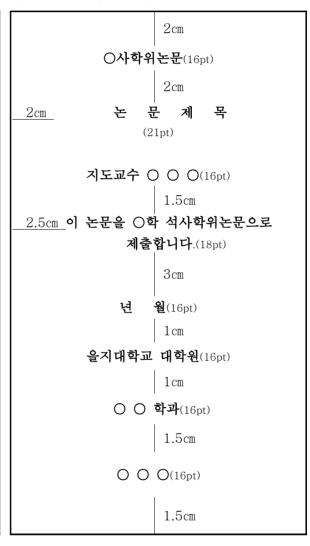
학위논문 양식

국문작성 논문일 경우(개정 2010.9.6)

[별지 도해 1] 표지양식

2.5cm cm ○사학위논문(16pt) 3cm논 논 문 제 목 문 (21pt) 제 목 (11pt) O O O(16pt) 0 0 3cm 3.5cm 0 1. 을지대학교 대학원(16pt) 2.5 cmcm 연 도 년 월(16pt) 2.5 cm

[별지 도해 2] 제출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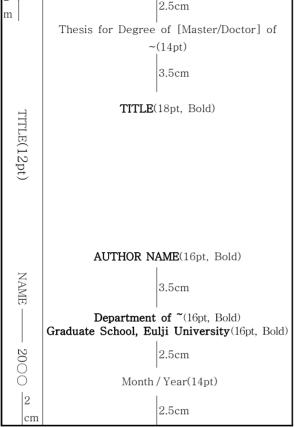
[별지 도해 3] 인준서양식



영어작성 논문일 경우(신설 2010.9.6)

도해(1) 표지양식

2 d 2.5cm



도해(2) 제출서양식

